



주혜진/세무사
본회 전문위원

기부금의 세무처리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타인(특수관계자를 제외함)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과는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본래는 손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부금 가운데 기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실상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또는 공익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손금 인정할 필요가 있어 지출한 기부금 중 일정 한도 내에서 공익성 기부금을 손금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부금의 범위와 기부금의 한도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손금 산입한도액과 한도초과액의 이월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범위를 열거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기부금의 범위」라는 항목으로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를 「의제기부금」으로 하여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1) 일반적인 기부금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간주되는 기부금 : 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이를 의제기부금이라 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시가의 30%를 감한 범위내의 가액을 말한다.

2. 기부금의 구분

(1) 대학교 기부금

2008년 12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09년부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 제73조 1항 14호).¹⁾

1) 본래 법인세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의 하나로 구분하고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은 대학의 연구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12.31까지 소득금액의 100%까지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2) 법정기부금

다음 종류의 기부금에 대하여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24조 2항).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²⁾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³⁾
-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③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④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⁴⁾, 기능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 특례기부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는 특례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②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에 법인이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③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④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⑤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의학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 ⑦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⑧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⑨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⑩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⑪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⑫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②: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法令38①).

4)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⑭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⑮ 휴면에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2010.1.1.신설).

(4)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에 기부한 공익성 기부금을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일정한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1항).

- ① 사회복지법인, 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학술연구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보급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의료법의 의료법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⁵⁾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함)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인정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1항 1호 사목).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

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② 공익신탁에 기부하는 기부금(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에 규정된 과세가액불산입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 ③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한 협회 등에 지급하는 협회비 등

공과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별회비 또는 영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5)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다수 규정되어 있다(법칙18).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일정한 단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2항).

(5)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한다. 예컨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또는 정당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기통 24-36-12).

3.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법인이 공익성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대학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순서로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24조

1항 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3항, 조특법 제73조 3항 2호)

(1) 대학교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text{손금산입한도} = (\text{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6) - \text{이월결손금}^7) \times 100\%$$

(2)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2항, 조특법 제73조 1항).

$$\text{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한도액} = (\text{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5\text{년}(10\text{년})\text{내 발생}) - \text{대학기부금 손금산입액}(조특법제73조 제1항제14호)) \times 50\%$$

(3)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text{지정기부금한도액} = (\text{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5\text{년}(10\text{년})\text{내 발생}) - \text{대학기부금 손금산입액}(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4호) - \text{법정·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 \times 5\%$$

- 6)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 함은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제외한 다른 세무조정을 모두 완료한 후의 소득금액에 법정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租特法73)·지정기부금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4조 1항 1호).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대학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7)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법법 24조 1항, 2항) 즉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4) 세무조정과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① 대학기부금과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그리고 한도초과액은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사회 환원 기부신탁의 특례기부금의 경우 : 3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산입은 이월된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에 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 24조 3항).
- ②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지정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 24조 3항).
- ③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 ④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기부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출자자인 경우는 배

당, 사용인(임원포함)인 경우는 상여 그 외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기통 67-106··6).

5. 기부금가액의 평가

기부금을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조특법 제73조 1항)의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지정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제공하는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법령 제37조 1항).

6. 기부금의 귀속시기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현금주의). 이때 지출일은 실제 현금지출일을 말하며,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실제로 결제된 날, 수표로 지급한 때에는 수표를 교부한 날을 말한다(법칙 제19조).

따라서,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며,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회계계산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법령 제37조 2항 3항).

시사경제용어

PIGS & STUPID

국제금융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주는 나라가 유럽의 '돼지들(PIGS)'에서 '멍청이(STUPID)'들로 확대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일본 닛케이신문이 발행하는 주간경제지 베리타스는 27일자 최신호에서 재정위기에 직면한 남유럽 '돼지들(PIGS)' 4개국에 이어 최근에는 '멍청이(STUPID)' 6개국에 대해 신용위기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 2. 23, 조선일보)

PIGS는 최근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유럽남부의 포르투갈(P), 이탈리아(I), 그리스(G), 스페인(S)과 아일랜드 등의 머리글자를 합쳐 만든 용어이며, STUPID는 재정·경상수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6개국을 말하는데 스페인(S) 터키(T) 영국(UK) 포르투갈(P) 이탈리아(I) 두바이(D) 등의 나라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지은 조어이다.